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라 한다.

- 제2조(구성 및 기능) ① 위원회는 행정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기획조정처장, 교학지원처장을 당연 직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7.09.01.>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.
 - 1. 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, 승급 및 팀장급 이상의 전보에 관한 사항
 - 2. 직원 포상・징계 대상자 심사 및 의결요구에 관한 사항
 - 3.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 직원 선정시에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4.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- **제4조(회의소집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- **제5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**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간사 등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.<개정 2021.1.21.><개정 2022.1.24>
- 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. 3.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. 2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